

발행일_ 2016. 04. 30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계문사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김영지 | 선임연구위원 yjkim@nypi.re.kr

요약¹⁾

-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2017년 6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사회적인 노력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학업부담과 각종 위험요인으로 낮은 삶의 질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권리주체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정책 주류화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권리모니터링과 협약 내용을 반영한 국내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함.
- 2017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범사회적 논의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년도 고유과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와 수시과제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협약 이행현황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 열악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건강권과 발달권을 위협받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은 이들이 공동체 시민으로서 잠재역량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인권 성숙도를 낮추고 있음.
 - 차별과 체벌 및 폭력 경험, 방임과 안전하지 못한 환경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인권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적극적 관심이 필요함.

▶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초4~고3).

- 10명 중 3명 정도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주요 원인은 학업성적(43.6%), 일 반계 고등학생 평균 수면시간은 6시간 5분이며 10명 중 7명이 수면부족 호소(전체 응답자 평 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업부담(31.0%)과 미래에 대한 불안(23.4%)
-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 가능 18.8%,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66.0%, 청소년 참여기 구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음 51.7%,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58.1%, 아동·청소 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 부족(35.2%)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 견(31.3%)
- 10명 중 2명 정도는 일 년에 1회 이상 학업성적, 연령, 외모나 신체조건,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 경험 : 학업성적(24.1%), 연령(21.0%), 외모 및 신체조건(19.6%), 성별(19.5%)
- 인권의식과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65.3%,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 해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0명 중 1명 정도(14.4%)에 불과
- 10명 중 2~3명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고 있음(부모체 벌 24.8%(초등30.5%), 교사체벌 18.5%(고등21.9%)). 초등학생의 54.1%가 밤늦게까지 혼자 집을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주 3회 이상 혼자 집을 보는 초등학생이 5.0%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살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9.9%, 64.5%로 나타나 10명 중 4명은 생활환경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 이 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 집단별 인권문제는 더욱 열악함. 가출, 폭력, 비혼모, 장애, 입양, 저소득층, 학업중단, 탈북·난민, 이주배경, 근로, 성착취, 사법절차상 의 청소년 등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갖는 집단별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 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 협약 이행현황

- ▶ 한국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만 18세 미만)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인권 진전 상황과 이행 노력 정도를 정리한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 정부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3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으며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2011년 제3·4차 심의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88개 항목의 권고사항 제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의 독립성 보장, 아동정책조정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아동 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아동·청소년 예산 확보, 인권교육과 홍보, 차별 및 폭력 금지, 학교 의사결정과정 참여,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 문제 해결, 여가와 놀 권리,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규정 마련,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조치 등.
- ▶ 전문가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노력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에 2.70점을 주어 우리 사회의 협약 이행 노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 정부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2017년 6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이를 위해 현단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그 동안의 진전사항과 이후 추진과제 점검이 필요함. 2017년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을 주요 사회적 과제로 보고 관련 법, 정책, 제도 등을 통해 보장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제²⁾

▶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 및 기능 활성화

-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협약 이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인적·재정적 자원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받고 있음.
-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근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전문위원 채용 또는 상설 사무국 설치 검토 등),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 회의 개최(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의제를 다루는 전문 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부처 내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의 활성화

-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청소년 인권 전담기구인 청소년 희망센터는 법적 기반 없이 계약사업 형태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어 사업 지속성 보장이 필요하며, 인권교육을 비롯하여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기에는 운영인력과 예산이 부족함. 청소년기본법에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위탁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기구였던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모니터링 기구의 기본 요건인 독립성과 자원 부족으로 2014년도 해소됨에 따라 아동권리협약 주무부서 내 모니터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협약 이행 모니터링 및 국가보고서 작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본 내용은 2015년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에서 50여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148개 과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이행조치' 영역의 일부 과제를 제시한 것임.

▶ 독립적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강화

-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독립적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현재 팀 단위 5인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모니터링과 권고, 진정사건의 조사·구제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아동·청소년인권팀을 ‘과’ 단위 조직으로 편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을 위해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아 옴. 특히 인권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아동·청소년 인권을 전담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독립적 권한을 갖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수행할 것을 제안 받아 옴.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 설치를 고려할 것(제2기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으로 201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후보 추천과 의견 제시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게 됨.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의 인권위원 진출 경로가 마련됨에 따라 인권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권분야의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5월부터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사안에 대한 적극적·체계적 대응 기반이 마련됨(기존에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침해구제 제2위원회에서 담당). 아동권리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와 아동·청소년인권팀의 인력 확대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 아동·청소년 눈높이의 홍보와 업무 안내 및 절차 수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성을 제고하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아동·청소년은 17.1%(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아동·청소년의 이익과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협약의 주요 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달성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함.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기초연구, 시범운영 및 정책 관계자 교육,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도화 및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센터 설립 및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등) 등이 필요함.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분야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5-5-2. 아동영향평가 도입), 아동복지법 제11조의 2(아동정책영향평가)
 -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5-3-1.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확대

-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협약 취지에 배치되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광범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 판결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함(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권고사항)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여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법 제·개정 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입법 및 사법 과정에서 법률의 아동·청소년 인권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와 매뉴얼 개발·보급 및 입법 및 사법 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의무화 필요

▶ 인권교육법 제정

-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방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과 부모, 이들과 함께 일하는 성인 등 모든 사람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판사, 교도관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은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인권교육법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대상과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실시 책무를 명확히 하며,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 유엔이 2011. 12.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음.
 -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인권교육 서비스(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와 교육 방법 개발 등)를 제공하는 인권교육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해 현실태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관련 법,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 노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